

## (주)알체라 수요예측 참가안내

신영증권(주)는 (주)알체라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0주를 공모함에 있어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가요령을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접수일시(한국시간 기준) : 2020년 12월 03일(목) ~ 04일(금) (09:00~17:00, 해외투자자 동일)

나. 접수방법 : 하기의 "5. 수요예측 참여방법" 참조

다. 연락처 : 02-2004-9452, 02-2004-9854, 02-2004-9142

### 2.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가. 대상주식 및 수량

구분	종류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 투자자	(주)알체라 기명식 보통주	1,500,000주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나. 주당 공모희망가액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8,000 원~10,000 원 (1 주당 액면가 500 원)

### 3.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내용
최고한도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1,500,000 주(기관배정수량) 중 적은 수량
최저한도	1,000 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반드시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미확약, 15일, 30일, 3개월, 6개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분	내용
수량단위	1,000 주
가격단위	100 원

주)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5.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신영증권(주)의 e-planup(HTS)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영증권(주)의 e-planup(HTS)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 신영증권(주) 인터넷 접수방법 ]

가. e-planup(HTS) 접속 : e-planup(HTS) ⇒ [계좌번호 접속] ⇒ [투자정보] ⇒ 증시일정 ⇒ [[3213] 공모주 수요예측 로그인] ⇒ [수요예측]

e-planup(HTS) 프로그램 다운로드  
www.shinyoung.com → 온라인채널안내 →이플랜업 e-planup 다운로드

나.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신영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다.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신영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회사를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 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영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18 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㉞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9 호에 해당하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㉟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20 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㊱ 신탁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1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㊲ 「금융투자업규정」 제 3-4 조 제 1 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 수요예측 참가자격

###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10 호(제 8 호의 경우 법 제 8 조 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 13 호부터 제 17 호까지, 제 3 항 제 3 호, 제 10 호부터 제 13 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 249 조의 6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8 조 제 6 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 3-4 조 제 1 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시 유의사항]

-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단서 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 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협약서,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협약서 및 총괄집계표' 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 마목, 사목, 제 2 조제 18 호, 제 2 조제 19 호, 제 2 조제 20 호,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9 조제 10 항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 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합니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18 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p>『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 명당 투자금액 3 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p> <p>『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 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 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p>
---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 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 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 28636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20 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 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0(제 3 호·제 4 호 또는 제 6 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 천만원 이하분은 100 분의 100, 3 천만원 초과분부터 5 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 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 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 3 항의 경우에는 제 1 항제 3 호·제 4 호 또는 제 6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4 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 251 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 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 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 년이 지나지 아니  
 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 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  
 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 분의 50 및 100 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 개월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약속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20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에 의거,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 2 조제 8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 9 조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 17 조의 2 제 5 항제 1 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 억원이상일 것
  - ②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제 1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약속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① 및 ②는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 개월 내지 24 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동 규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⑥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 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자 등
- ⑦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0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 2 조제 8 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 6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 10 조의 3(환매청구권)

-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 5 조제 1 항제 2 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에의거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등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 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신영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에 의거 신영증권(주)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신영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young.com)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 천만원 당 1 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 1)	1 억원 초과	6 개월 + 1 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 억원 당 1 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1 억원 이하	6 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법 제 11 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 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 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 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지 위반			12 개월 × 환매비율 주 2)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 개월 이내 금지

주 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 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 / (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 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 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 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 회인 경우 100 분의 50, 3 회 및 4 회인 경우 100 분의 100, 5 회 이상인 경우 100 분의 200 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 개월, 기타의 경우 24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 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주 5)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상기 감면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 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 6)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 6)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주 8) 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 만원, 경제적 이익]

\* 100 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증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증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 11 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증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증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증가로 적용하여 산정

## 7. 확정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격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격"을 신영증권 홈페이지(www.shinyoung.com)에 게시합니다.

## 8.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함)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범위)에서 배정합니다.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4 항 제 4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 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li>②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li><li>③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회사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li></ul> |
|--|

## 9.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신영증권(주)의 홈페이지(www.shinyoung.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신영증권(주)의 「e-planup(HTS) → [계좌번호 접속] → [투자정보] → [증시일정] → [[3213]공모주 수요예측 로그인] → [배정확인]에서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같음합니다.

## 10. 기타

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다.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라.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